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26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8.

발 의 자 : 김미애・황보승희・김승수

김상훈・박 진・윤두현

정경희 · 신원식 · 김예지

조명희 · 강대식 · 성일종

백종헌・송석준・김 웅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가 실시한 '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'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만6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응답률은 1. 1%로 지난해 조사보다 0.2% 증가했으며, 교사단체들도 저연령·흉포화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호소하고 있음.

특히 지난 7월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상대로 한 가학적 집단폭행 사건은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다문화 학생 피해자가 2~3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아울러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

려운 경우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사건의 조사·처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·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3(보조인) 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 - ②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
 -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④ 심의위원회는 보조인이 심의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⑤ 「형사소송법」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학교폭력 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.
- 제13조의4(국선보조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법정대리

인·직계친족·형제자매, 그 밖의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
- 2. 언어적·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
- 3.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
- 5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 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폭력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 선 설> 제13조의3(보조인) 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사건 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수 있다. ②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.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한다. 이 경우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한다.
④ 심의위원회는 보조인이 심 의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이익에 반하 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

<신 설>

- ⑤ 「형사소송법」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학교폭력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준용한다.
- 제13조의4(국선보조인) ① 다음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 경우 심의위원회는 직권에 의
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
 생의 법정대리인·직계친족·형제
 자매, 그 밖의 학생이 소속된
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
 사를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
 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
 다.
 - 1.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

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

 되는 경우
 - 2. 언어적·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
 - 3.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5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보조

<u>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경우</u>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 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 여는 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